

	창업동아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5. 9. 14.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조(목적) 창업동아리의 운영목적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학풍과 대학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2조(등록) 창업동아리 활동은 대학 소정양식에 의해 등록하고 산학협력단 예산 내에서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조(등록 절차) 창업동아리의 장은 매년 3월 창업동아리 등록 공고 기간에 다음 서류를 산학취업처에 제출한다.

- 1) 창업동아리 승인신청서 (별표 1)
- 2) 회원명부 (별표 2)
- 3) 회원카드 (별표 3)
- 4) 지도교수 승낙서 (별표 4)
- 5) 사업계획서 (별표 5)
- 6) 창업동아리 회칙
- 7) 전년부터 계속되는 동아리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실적 관련서류

제4조(가입 및 탈퇴) 창업동아리의 가입, 활동 및 탈퇴는 학생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다.

제5조(특별활동) 창업동아리의 특별활동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 창업동아리실에는 비품대장을 비치하여 물품관리는 각 동아리의 회장이 책임을 진다.

제7조(홍보) 창업동아리의 홍보물(유인물, 포스터, 현수막)은 정해진 위치에 게시하고 홍보기간이 지나면 자체 회수한다.

제8조(재정) 창업동아리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비와 기타 실험기자재 구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을 지원받아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아리실의 사용시간은 07시에서 23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창업보육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2. 동아리실 내에 기본시설 이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3. 동아리실 내에서 음주, 취사 및 소란행위를 할 수 없다.
4. 동아리실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아리 회장의 사용 신청으로 창업보육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동아리 회원들은 학교 관리인의 안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 동아리 지원비 사용과 활동 내역 및 운영에 관련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산학취업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창업 동아리 회원들은 제9조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그 위반이 학생의 본분에 반하여 음주 후 학교기물을 파괴하는 등 중대하거나 위반 회수가 3회 이상 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또는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업동아리 승인신청서

결 재	담당	부처장	처 장

창업동아리명			
창업아이템명		회 원 현 황	남 : 명 여 : 명 계 : 명
활 동 개 요 (목적과 활동내용을 명확히 기재 할 것)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창업동아리를 등록하고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창업동아리 회장 소 속 : 학번 : 창업동아리 회장 연락처 : 창업동아리 회장 성 명 : (인)			
제 출 서 류	1.창업동아리 승인신청서 (제1호 서식) 2.창업동아리 회원명부 (제2호 서식) 3.창업동아리 회원카드 (제3호 서식) 4.지도교수승낙서 (제4호 서식) 5.창업동아리 회칙 6.사업계획서(제5호 서식) 7.서약서(제6호 서식) 8.전년도 사업실적 관련서류(신규동아리 제외)		

〈별표 2〉

창업동아리 회원 명부

창업동아리명 : _____

작성일자 : _____

작성자 : _____ (인)

순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집)	직분
							E-MAIL	
1								
2								
3								
4								
5								
6								
7								
8								
9								
10								

〈별표 3〉

창업동아리 회원 카드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사 진 (3×4) 반명함판	창업동아리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학 과, 학 번	학번 :		
본 적				
주 소	(전 화) :			
현 거 주 지	(전 화) :			
휴 대 전 화	E-mail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년 월 일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병 역 관 계	복 무 구 분	면제, 미입대, 여학생, 전역 (계급 :)		
	전 역 일 자	20 . .		
	전 역 구 분	육군, 공군, 해군, 해병, 의경, 전경, 방위산업체		
자 격 증 취 득 현 황	자 격 증 명	취 득 일	발 령 청	
기 타				

지 도 교 수 승 낙 서

학생들의 창업정신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
창업 동아리의 지도교수직을 승낙하며 적극적인 지도
와 감독을 약속 합니다.

창업동아리명 :

지 도 교 수 : 인

20 년 월 일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5〉

창업동아리 사업 계획서

창업동아리명 : _____

작성일자 : _____

작성자 : _____ (인)

사업명	사업개요(내용)	시행시기 및 기간	비고

창업동아리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창업동아리의 모든 활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2조(등록) 창업동아리 활동은 본교 소정양식에 의해 등록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조(등록절차) 창업동아리의 장은 매년 3월 창업동아리 등록 공고 기간에 다음 서류를 창업보육센터장에게 제출한다.

- 1) 창업동아리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회원명부 (별지 제2호 서식)
- 3) 회원카드 (별지 제3호 서식)
- 4) 지도교수 승낙서 (별지 제4호 서식)
- 5)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 6) 창업동아리 회칙
- 7) 전년부터 계속되는 동아리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실적 관련서류

제4조(가입 및 탈퇴) 창업동아리의 가입, 활동 및 탈퇴는 학생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다.

제5조(승인) 창업동아리의 특별활동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 창업동아리실에는 비품대장을 비치하여 물품관리는 각 동아리의 회장이 책임을 진다.

제7조(홍보) 창업동아리의 홍보물(유인물, 포스터, 프래카드)은 정해진 위치에 게시하고 홍보기간이 지나면 자체 회수한다.

제8조(지원)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을 지원받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1) 동아리실의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창업보육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2) 동아리실 내에 기본시설 이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3) 동아리실 내에서 음주, 취사 및 소란행위를 할 수 없다.
- 4) 동아리실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아리 회장의 사용 신청으로 창업보육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 5) 동아리 회원들은 학교 관리인의 안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모든 동아리 회원들은 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규정 및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서 약 서

창업동아리 회장 _____외 모든 회원들은 동아리 활동에 관한 창업동
아리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창업동아리명 :

서 약 자 : 회장

②인

<별표 7>

전 년 도 사 업 실 적 표

20 년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세부내용	비 고

※ 관련 근거서류는 별도 첨부 요망.

창업동아리 회칙(예문)

제1조(목적) 본회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기술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연구하여 제품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정신과 창업 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6개월 이상 본회에서 활동한 학생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6개월 이상 본회에서 활동한 학생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 무 : 재정 및 사무를 관장하며 회장,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과 창업동아리 운영규정에 의한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가입 : 타 창업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으로 회원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임원회에서 가입의사를 확인한 자로 한다.
2. 권한 :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으며 본회 회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다.
3.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탈퇴

- ①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히면 임원회에서 확인하여 탈퇴 조치한다.
- ② 본 회 또는 본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학칙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는 임원회에서 이를 확인,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탈퇴 처리한다.
- ③ 본 회에 가입 후 타 창업동아리에 2중으로 등록할 경우 임원회의 확인을 거쳐 자동탈퇴 처리한다.

제4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 ① 매년 ()월중에 소집하며 회장은 소집 1주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 ② 임원선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 ③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모든 의결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임시총회

- ①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하며 회장은 소집 2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 ② 임원의 보선, 중요사업계획 변경 기타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 ③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모든 의결은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임 원 회

- ①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칙과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범위의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결정과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결정한 다.

제5조(재정) 1 .수입은 회비, 찬조금, 수익사업 이익금으로 하고 현금은 시중 금융기관통장을 만들어 보관한다.

2.지출은 회장이 확인하여 총무가 집행한다.

3.예산편성 및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활동) 본 회에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기반 능력을 얻기 위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 1. 기술세미나 개최 및 참여
- 2. 작품 활동 및 작품 발표회
- 3. 각종 창업 로드쇼 참여
- 4.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 5. 관련분야 전시회 및 업체 견학

제7조(기타) 1. 본 회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님 중에서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달성하도록 지도해 주실 지도교수를 모신다.

- 2. 기타 본 회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내용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결정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운영토록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